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407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4079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가단10310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7. 19.

판결선고 2024. 10. 11.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3가단10310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8.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2018. 8. 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제1심법원은 2023. 1. 26. 피고에게 소장부분,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발송하였고, 피고의 자녀인 C가 2023. 1. 31. 피고의 동거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 그 뒤 피고 본인이 2023. 3. 29. 변론기일통지서, 2023. 5. 12.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23. 7. 18.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23. 8.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여, 2023. 8. 17.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23. 10. 1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피고 및 피고의 동거인이 직접 수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처음부터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의 계속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경우와는 다르고, 피고는 위 송달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기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심법원의 판결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23. 8. 17.부터 항소기간인 2주를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0. 18. 제기된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소연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판사 김수연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873.42㎡,

2층 내지 15층 각 856.86㎡,

지층 823.2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 6751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6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7511.3분의 40.24 끝.

